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서비스

나.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준용하여 정의함.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시행계획)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중·단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지원사업)부터 안 제9조(위탁)까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과거 가사노동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가족을 위한 금전적인 대가성이 없는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노동이 재평가되고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형태로 변화하였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시행. '22.6.16.)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가사근로자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에 근거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가사근로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는 동 법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본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위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까지 아울러 정의를 확대한다는 데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제정안 제5조제2항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을 우리 구(區) 노동자 권리 기본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제정안: 3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5년)가 상이한 바 추후 기본계획 수립 시 수립 주기를 맞출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96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김지연, 유승용, 양송이
신흥식 의원(4인)

1. 제안이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

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